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운영지침

[시행 2020.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취업) 조기취업(이하 ‘취업’이라 한다)이란 8개 학기 이상 등록자로서 학기 수료 이전에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취업 신청자격) ① 취업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3. 취업인정학점의 취득으로 졸업을 위한 기본 구비요건을 충족한 자
 4. 현장실습학기제, 창업 관련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②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기업에서의 인턴, 취업연수, 교육 등은 별도의 자격심의를 한다.

제4조(취업 승인요청 제출서류) 취업 승인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춰 담임교수를 경유한 후,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기취업신청원
2. 조기취업자 수강확인 요청서
3. 재직증명서
4. 건강보험가입증명서
5. 기타 취업을 입증할 증빙자료

제5조(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 취업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취업 활동을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하여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원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취업의 개시일) 취업신청원을 제출하여 학부장으로부터 취업을 승인받은 날을 취업개시일로 본다.

제7조(취업 인정) ① 해당 학부장은 신청원을 검토하여 그 자격이 부합한 자에 한하여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취업이 확정되면, 신청자, 신청자의 수강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업 담당 교원은 학부장으로부터 취업이 승인된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과제부여와 평가 등을 거쳐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취업자의 의무) ① 취업이 승인된 자는 본 대학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도덕, 성실성을 담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 중, 신변상의 변동이나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담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적평가를 위해 학기말고사 기간 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자격상실자의 수업 복귀와 성적평가) ① 취업자가 취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취업포기원을 제출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취업포기가 확정되면, 신청자의 수강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